

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8. 19.(목) 09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51-223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36차 위원회('10. 6.11) 보고 후,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(수정)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같은 법 시행령은 방송사업의 소유·경영 제도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('09. 7. 31)에 따라 마련됨

○ 주요 내용

①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(신설, 제52조의3)

-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 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

※ 당초 입법예고안 중 '시청점유율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' 삭제

②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(신설, 제52조의4)

- 시청점유율 산정기간,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기준,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,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내용을 규정

※ 당초 입법예고안 중 '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', '자료 제출 요구권', '이해관계자 의견청취' 관련 조항은 삭제

③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적용 기준 마련(신설, 제52조의5)

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(방송사업 소유제한, 방송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 일부 양도) 중

- 방송사업 추가 진입 금지는 추가적인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30% 초과 시 바로 적용하도록 함
- 방송광고시간 제한은 법 위반으로 인한 방송광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30% 초과 시 바로 적용하도록 함
- 방송시간 일부 양도와 방송사업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은 시청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

※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,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적용 기준을 명확화

④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제한(신설, 제52조의6 및 7)

- 방송사업 소유제한 유형으로 신규 방송사업 진입 금지,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추가 소유 금지,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(매각 기준 : 전년도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 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) 조치를 정함

※ 당초 입법예고안 중 방송사업자의 '자산 매각'은 과도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,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'매각 기준'을 명확화

⑤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(신설, 제52조의8)

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방송광고시간 제한 기준을 정함

⑥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시간 양도(신설, 제52조의9부터 제52조의11)

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주 채널에서 주 시청 시간 방송시간의 1/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

·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고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참여를 배제

※ 당초 입법예고안 중 '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협조' 관련 조항과 '손해 배상'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방송시간 양도의 유·무상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'무상'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

⑦ 기타 사항

- 중간광고·토막광고에서 광고회수와 광고건수를 동시 규제하는 것에서 건수 규제를 삭제(개정, 제59조)

- 외주제작 편성비율 기준 및 1개 국가 외국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기준을 '분기'에서 '반기'로 조정(개정, 제58조)

-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, 광고법규 준수 여부, 방송내용의 기록 보존 여부, 방송 실시 결과의 제출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(개정, 제68조)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0:35)